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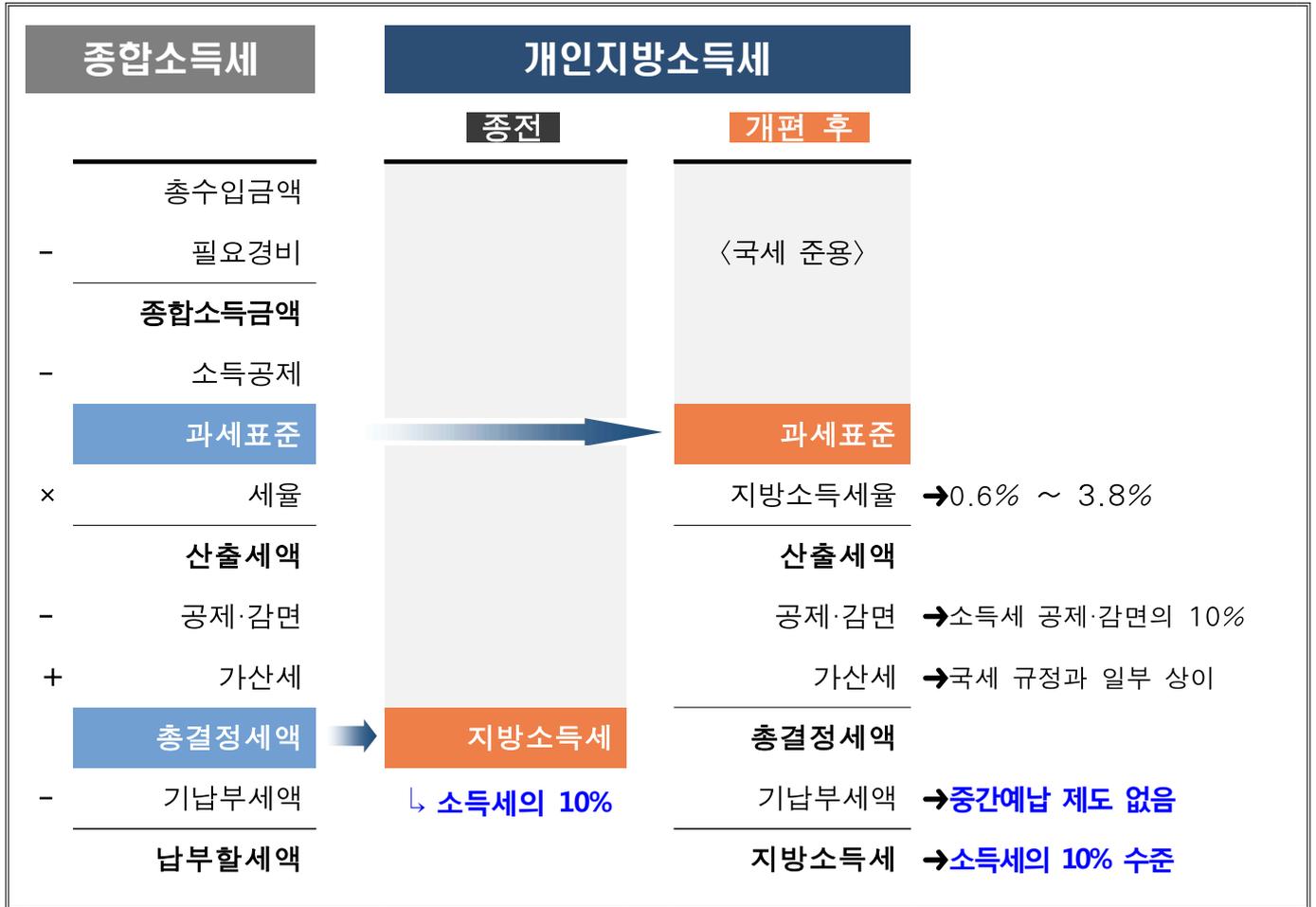
##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이 있는 신고 대상자는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더불어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올해까지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국세신고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며,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와 동시신고를 통한 납부 및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행자부 WeTax시스템(<http://www.wetax.go.kr>)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으며,
- 가상계좌, 카드납부, 인터넷뱅킹, ATM, 스마트폰, ARS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내 미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1일10,000분의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납기 마감일에는 신고·납부 집중이 예상되니 가급적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세무2과 지방소득세 2팀(☎ [02] 3423-5701~7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강 남 구 청 장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안내



종전 소득세 총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 왔으나, '14년 이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0.6~3.8%),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등 개편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16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세액공제·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의 10% 수준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 납부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①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② 납세지는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 다만, 「소득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지 지정제도는 지방세 규정에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와 납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③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④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 4,600만원 이하	72,000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8,800만원 이하	582,000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1.5억원 이하	1,590,000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5억원 초과 ~	3,760,000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⑤ 세액공제 · 감면은 종합소득세의 10%로 규정하였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공제·감면되는 경우 그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 ⑥ 가산세는 국세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등 국세와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국세> 1개월 내 50%, 6개월내 20% 감면 <지방세> 1개월 내 50%. 6개월 내는 규정 없음
- 「지방세법」 제99조에서 「소득세법」 81조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 그 더하는 금액의 10%를 지방세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장 불성실,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와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가산세액만 적용,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7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합니다.

-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함께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서울, 세액공제감면 등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으나, 최종 세액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계산되므로 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40호 서식)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16.3.16.>

작성방법

지방소득세란: ④ 과세표준란에는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④ 서울란·④ 산출세액란에는 서울표에 소득세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④ 세액감면 및 ④ 세액공제 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④와 ④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④ 가산세액란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에 따라 ④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단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는 「기법」 제54조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④ 추가납부세액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④의 100분의 10에 금액을 적습니다. ④ 기납부세액은 ④종합소득세기납부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과세표준	귀속년도	2014년~2015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서울	누진공제액	서울	누진공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천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5%	1,490
1억 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3.8%	1,940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
종합소득금액	①			
소득공제	②			
과세표준(①-②)	③		④	⑤
서울	⑥		⑦	⑧
산출세액	⑨		⑩	⑪
세액감면	⑫		⑬	
세액공제	⑭		⑮	
결정세액(⑨-⑫-⑭)	⑯		⑰	⑱
가산세	⑲		⑳	㉑
추가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㉒		㉓	㉔
합계(⑯+⑲+㉒)	㉕		㉖	㉗
기납부세액	㉘		㉙	㉚
납부(환급)할 총세액(㉕-㉘)	㉛		㉜	㉝
납부특례세액	차감	㉞		
	가산	㉟		㊱
분납할세액	2개월 내	㊲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㉛-㉞+㉟-㊲)	㊳		㊴	㊵

**⑧ 전자 납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납부시 지방소득세도 동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로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하며,
- 이택스 및 위택스와 연계하여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이택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https://etax.seoul.go.kr>)

위택스 (전국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http://www.wetax.go.kr))